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9. 4 선고 2023가단483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8. 14.

판 결 선 고 2024. 9. 4.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되, 개별 부동산은 ‘제0항 부동산’이라 표시한다) 중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3. 7.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0차전4675호)을 신청하여 'C는 원고에게 26,078,309원 및 그 중 21,873,477원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0. 7. 29.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C의 아버지 D이 2023. 6. 4. 사망하자 피고는 2023. 7. 17. D의 자녀들인 E, F, G, C와 사이에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를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11호증 내지 제2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1/5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이상, 위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사해의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적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채무자 D, 근저당권자 H조합으로 제1, 2항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8. 6. 2. 채권최고액 7,000만 원, 2014. 3. 12.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제3항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0. 1. 6.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제4항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 3. 12. 채권최고액 각 7,000만 원, 2020. 1. 6.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피담보채무액이 1억 4,300만 원인 점, ② H조합이 D에게 금원을 대출할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총 256,428,000원(= 72,602,000원 + 183,826,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시가에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22. 11. 24. 채권최고액 1,8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I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그 피담보채무

원금만 1,410만 원인데 D의 상속인인 피고가 그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점, ④ D이 C와 C의 배우자인 J에게 수회에 걸쳐 1,585만 원{= 1,185만 원(= 2014. 9. 23.부터 2014. 10. 23.까지 5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120만 원 + 215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2022. 6. 28.부터 같은 해 7. 6.까지 150만 원 + 150만 원 + 90만 원 + 5만 원 + 5만 원))을 증여한 점, 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256,428,000원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이 1억 4,300만 원을 반영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에 대한 담보는 22,685,600원(= 113,428,000원 × 1/5지분) 정도인데, 여기에 다시 C가 D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물상보증을 고려하면, D의 상속인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에 피고에게 C의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혜

부동산 목록

1. 경기도 남양주시 대 526㎡
2.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조적조 아스팔트성글지붕 단층농가주택 1층 99㎡
3. 경기도 남양주시 답 265㎡
4.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 134㎡ 끝.

